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9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조경태·조정훈·김성원

강선영 • 조지연 • 박준태

곽규택 · 김형동 · 박대출
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(2022.12.27.)이 이루어진 바,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 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, 해양과학기술, 해양 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,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,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

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·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 1항). 법률 제 호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국제해양법 분야"를 "국제해양법, 해양수산자원,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	제31조(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
등)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(<u>국</u>	등) ① <u>국</u>
<u>제해양법 분야</u> 를 포함한다)의	제해양법, 해양수산자원, 해양
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이를 효	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-
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	
수 · 교육기관을 설치 · 운영하	
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